

|        |             |
|--------|-------------|
| 의안번호   | 2205847     |
| 의 퇴 인  | 서지영 의원      |
| 회 답 일  | 2024.12.10. |
| 추 계 번호 | 24C5361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18조의4<br>(학생의 인권보장 등)          | (제3항)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내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재량규정                  |
|    |                                   | (제4항)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                                   | (제5항) 보호자는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제4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의무규정                  |
|    |                                   | (제6항)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제3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4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하 “위기 학생”이라 한다)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재량규정                  |
|    |                                   | (제7항) 교육감은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    |                                   | (제8항)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4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상담·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무규정                  |
| 2  | 안 제19조의2<br>(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제1항)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                                                                                                                       | 의무규정<br>(단서:<br>재량규정) |
| 3  | 안 제28조<br>(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br><br>1. 성격장애나 정서·행동문제 및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 의무규정                  |

|   |                 |                                                                                                                                     |      |
|---|-----------------|-------------------------------------------------------------------------------------------------------------------------------------|------|
|   |                 |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      |
| 4 | 안 제68조<br>(과태료) |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3. 위기학생의 보호자로서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상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치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의무규정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19조의2<br>(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등에게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에 원칙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부적응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업중단을 방지하고자 위(Wee)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위학교에 설치되는 Wee클래스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설치되는 Wee센터, 시·도교육청 차원의 Wee스쿨로 구성됨
    - '24년 기준 Wee클래스 9,115개소, Wee센터 207개소, Wee스쿨 등 52개소 운영
  - 특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또는 위탁기관으로 Wee센터를 운영하며,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전문기관 연계,

지역 학교나 교원에 대한 연수·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운영 중<sup>1)</sup>

- 또한, 부적응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해 위탁교육, 병원 치료 연계, 학교 복귀 지원 등을 위해 위스쿨, 가정형·병원형 위센터 52개소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운영중<sup>2)</sup>
- 이에 안 제18조의4와 안 제28조제1항 제1호가 시행되더라도 학교의 장이나 교육감의 “지원”이 현재 설치된 Wee센터나 Wee스쿨 등 Wee프로젝트 또는 기존 학교 및 교육청 인력 내에서 운영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안 제19조의2와 관련하여 '24년 현재 배치되어 있는 정규직 전문상담교사 외에 기간제 교원 또는 보직교사를 겸하는 전문상담교사를 포함시킬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관련 재정소요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
  -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는 초등학교에 2,113명, 중학교에 2,024명, 고등학교에 1,631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이에는 기간제교원과 보직교사를 겸하는 전문상담교사가 포함됨
  - 이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에 배치될 전문상담교사를 모두 정규직 전담 전문상담교사로 충원할지 여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것이며, 전문상담순회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전체 전문상담교사수가 바뀔 것이나 해당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
  - 참고로,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비율은 초등학교 31.5%(정규직 배치 학교비율 26.0%), 중학교 55.5%(정규직 배치 학교비율 48.3%), 고등학교 63.1%(정규직 배치 학교비율 48.5%)임<sup>3)</sup>

□ 이에 개정안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 특별교부금으로 대면 상담 자문('24년 5.96억), 위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24년 4개 시도(공모·선정) 총 10억 등 일부 지원(자료: 교육부)

2) 이외에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문의 주도 사례회의를 통해 개입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운영중임(자료: 교육부)

3) 2023 교육통계 참조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사회비용추계과 | 정혜승 | 이진우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정혜승 | 02-6788-4627 | hs0387@assembly.go.kr |